

최근의 국내 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문 등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25. 자 판결(2006가합11556)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들(이하 원고 회사)이 한국방송공사와 소속 기자(이하 피고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지난 2006. 4. 1. 「미디어포커스」 프로그램 『이슈, 비평 : 한 쪽은 칭찬, 한 쪽은 비판.. OOOO를 보는 상반된 시선』 제하의 보도에서 원고 회사가 지난 2006. 2.부터 커피전문점 OO OO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연이어 내보낸 것에 대해 “원고 회사가 OOOO를 연이어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한 것은 OOOO가 조선일보의 신문 무인판매대 설치 제의를 거절하고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신문 무인판매대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다”라며 “언론사가 자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일은 우리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이

처럼 기업체가 광고나 협찬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언론사가 이에 대한 보복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일선 기자들도 이러한 광고나 협찬 따오기에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회사와 OOOO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조선일보 기사의 보도 취지를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매체 간의 비평이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

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피고 김□□이 이 사건 방송을 위하여 취재할 당시 원고 회사와 ○○○○가 신문 무인판매대 설치 문제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었던 점, 피고 김□□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를 취재하고 이 사건 방송과 같은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조선일보 기사의 배경에 위와 같은 분쟁이 있다고 믿게 된 점, 이 사건 방송은 사실보도 프로그램이 아닌 매체비평적 관점에서의 평가적 의견 보도의 성격이 많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방송내용이 진실하다는 증명은 부족하더라도, 피고들은 적어도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11556 손해배상(기)  
 원 고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표이사 방 상 훈  
 2. 김 ○ ○  
 3. 손 ○ ○  
 원고들 주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조선일보사건물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피 고 : 1.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2. 김 □ □  
 피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방송공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변 론 종 결 : 2007. 9. 13.  
 판 결 선 고 : 2007. 10. 25.  
 주 문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게 100,000,000원, 원고 김○○, 손○○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4. 1.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김○○, 손○○은 원고 회사 소속의 기자이며,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전국을 방송권역 및 가시청권으로 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미디어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며, 피고 김□□은 피고 회사 소속의 기자로서 2006. 4. 1. 미디어포커스 프로그램에서 “이슈, 비평 : 한 쪽은 칭찬, 한 쪽은 비판.. ○○○○를 보는 상반된 시선”이란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취재하고 보도한 자이다.

(2) 미디어포커스는 일주일에 1회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정한 사건에 대한 신문, 방송 등 여러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비평을 하는 이른바 매체비평프로그램이다.

나. 이 사건 방송의 경위

(1) 원고 손○○와 김○○은 2006. 2. 17. 조선일보 경제면 1면에 “자장면보다 비싼 커피값 왜?”라는 제목으로 커피전문점의 커피가격을 분석하면서, ○○○○의 로고만을 표시하였고, 그 내용도 커피원가 중 재료값은 200원에서 4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임대료, 인테리어비, 인건비이며, 마진은 18%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또한 원고 김○○은 2006. 3. 23. 조선일보 경제면 1면에 “○○○○가 기가 막혀”라는 제목으로 한국 ○○○○가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미국의 ○○○○ 본사로 송금을 하여 2005년 한해에만 로열티로 45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2006년부터는 미국 본사에 배당을 하게 되어 60억 원을 배당할 예정이며, 투자에 비하여 수익률이 좋다고 하면서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의 커피 값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기사를 실어 ○○○○를 비판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선일보 기사라 한다).

(2) 한편 소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중앙일보라 한다)는 2006. 2. 21. “하루 5만 홉짝... 커피도 경제다”라는 제목으로 ○○○○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사진과 함께 커피 전문점을 찾은 것이 비즈니스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고, ○○○○의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 ○○○○를 홍보하였다.

(3) 위 (1), (2)항과 같이 원고 회사는 ○○○○를 비판하는 기사를 경제면 1면에 게재하고, 중앙일보는 ○○○○를 홍보하는 기사를 경제면 1면에 게재한 것에 대하여, ① 미디어오늘의 소외 김△△ 기자는 2006. 2. 28. “조선, 중앙 새 사업 때마다 ‘오비이락’”이라는 제목으로, ② 머니투데이의 소외 홍○○ 기자는 2006. 3. 23. “유력 일간지 기 싸움에 ○○○○ 곤혹”이라는 제목으로, ③ ○○○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소외 최○○은 2006. 3. 29. 한국일보 미디어비

평란에 “선거철 편향보도가 두렵다”라는 제목으로 모두 조선일보가 ○○○○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중앙일보는 ○○○○를 홍보하는 기사를 쓴 것은 ○○○○가 조선일보의 요구는 거절하고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 매장에 신문 무인판매대를 설치·운영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방송의 내용

피고 김□□은 2006. 4. 1. 피고 회사의 미디어포커스 프로그램 중 “이슈 & 비평” 코너에서 위와 같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기사 내용이 ○○○○의 중앙일보 무인판매대 설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기사와 같은 이 사건 방송을 하였다.

(1) 조선일보는 2006. 2.부터 ○○○○가 너무 비싸다거나, 로열티가 지나치게 많이 빠져 나간다 등의 비판적인 기사를 연이어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2006. 2. 17. “자장면보다 비싼 커피값 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경제면 머리기사로 실었으며, 위 기사에서는 ○○○○의 로고가 찍힌 컵을 배경으로 커피의 원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선일보는 2006. 3.에도 경제면 1면을 할애하여 “○○○○가 기가 막혀”라는 제목으로 ○○○○를 비판하였다. 이에 반하여 중앙일보는 2006. 2. 21. “하루 5만 홉짝... 커피도 경제다”라는 제목으로 ○○○○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사진과 함께 홍보하는 기사를 경제면 1면에 실어서 ○○○○를 홍보하였다.

(2) 조선일보가 위와 같이 ○○○○를 연이어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한 것은 ○○○○가 조선일보의 신문 무인판매대 설치 제의를 거절하고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신문 무인판매대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3) 언론사가 자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일은 우리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인

데, 이처럼 기업체가 광고나 협찬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언론사가 이에 대한 보복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일선 기자들도 이러한 광고나 협찬 따오기에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 22, 2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와 원고 회사 사이에는 신문 무인판매대와 관련한 분쟁이 없었고, 원고 김○○, 손○○는 이 사건 조선일보 기사를 작성할 당시 원고 회사와 ○○○○ 사이의 신문 무인판매대에 관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를 의도적으로 공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회사와 ○○○○ 사이에 위와 같은 분쟁이 있는 것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원고 김○○, 손○○의 이 사건 조선일보 기사 보도 취지를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매체 간의 비평이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건전한 매체비평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은 진실한 것이며 가사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방송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3. 판단

### 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 (1) 일반론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 (2) 이 사건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들이 ○○○○와 무인 가판대 설치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를 비판하는 기사를 경제면 1면에 비중 있게 게재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방송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다.

### 나. 위법성 조각 여부

#### (1) 일반론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

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위 2003다52142 판결 참조).

#### (2) 이 사건 방송의 공익성 여부

이 사건 방송은 원고 회사와 중앙일보가 ○○○○에 관한 서로 상반된 시각의 기사를 내보낸 것에

대하여 제3자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배경을 밝힘으로써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다양한 관점에서 기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이 사건 방송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 여부

을 제2 내지 4, 8, 17 내지 2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 민○○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 코리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소속의 소외 민○○ 기사는 2006. 2. 20. ○○○○ 본사의 홍보실 대리인 소외 이○○를 만나서 취재를 하였는데, 이○○는 민○○ 기자에게 최근 조선일보가 ○○○○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낸 것은 ○○○○가 중앙일보에게 무인판매대를 제공하였는데 조선일보의 요구는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였던 사실, ② 민○○는 피고 김□□이 이 사건 방송을 위하여 취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의 이○○를 취재하였던 정보를 건네준 사실, ③ 피고 김□□은 ○○○○의 양○○ 팀장과 이○○ 대리를 찾아가 인터뷰를 하였으나, 양○○과 이○○는 신세계 그룹과 원고 회사 사이의 관계를 우려해서 민○○ 기자에게 했던 이야기와는 다르게 진술했었던 사실, ④ 피고 김□□은 2006. 3. 27. 미디어오늘의 김△△ 기사를 찾아가 이 사건 방송과 같은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는데, 김△△ 기사는 피고 김□□에게 자신의 취재 메모를 넘겨주면서 자신이 중앙일보 관계자, ○○○○ 이○○ 대리를 만나서 직접 이 사건 방송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말하였던 사실, ⑤ 피고 김□□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사 소속의 소외 현○○ 기사를 인터뷰하였는데, 현○○ 기사는 자신이 신세계 그룹 홍보실의 모 과장으로부터 이 사건 방송과 같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확인받았다고 답변하였던 사실, ⑥ 피고 김□□은 원고 회사와 중앙일

보 측의 반론도 신기 위하여 원고 김○○, 손○○ 기자와의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원고들이 거절하였고,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팀장인 소외 이△△은 인터뷰에 응하여 이를 이 사건 방송에 보도하였던 사실, ⑦ 피고 김□□은 한국일보 미디어비평란에 칼럼을 기고한 최○○ 교수와의 인터뷰도 시도하였으나 최○○ 교수가 이를 거절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 김□□이 이 사건 방송을 위하여 취재할 당시 원고 회사와 ○○○○가 신문 무인판매대 설치 문제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었던 점, 피고 김□□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를 취재하고 이 사건 방송과 같은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조선일보 기사의 배경에 위와 같은 분쟁이 있다고 믿게 된 점, 이 사건 방송은 사실보도 프로그램이 아

닌 매체비평적 관점에서의 평가적 의견보도의 성격이 많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방송내용이 진실하다는 증명은 부족하더라도, 피고들은 적어도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경 민  
판사 김 은 정  
판사 정 경 희 □

## 판결 2

### 보도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으로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6. 자 판결(2007가합13887)

####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 노동조합과 조합장 지○○(이하 원고들)이 문화방송(이하 피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지난 2005. 7. 3.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카메라 출동 - ○○○의 블랙리스트』 제하의 보도에서 ‘지난해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가 노조활동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의 노조활동 개입은 명백한 현행법위반이나 ○○ ○는 지난해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의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3.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각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 지○○은 2002. 12.경 실시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직원들로 구성된 원고 ○○○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제8대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03. 1. 1. 원고 조합의 조합장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 조합과 ○○○가 2004. 12. 17.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하자, 동아일보, 한국일보, 노컷뉴스, 연합뉴스 등은 이에 대한 찬반의견을 보도하였는데, 한겨레신문도 2005. 1. 7.자 신문에 원고 조합과 ○○○를 신노사문화대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찬성의견과 함께 '○○○의 강도 높은 노조 길들이기로 원고 조합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원고 조합과 ○○○를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동시에 게재하면서 2003. 8.경 원고 지○○이 원고 조합을 대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의 대표자와 악수하는 사진(이하 '제1화면'이라 한다)을 같이 실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방송사'라

한다)의 기자인 박○○는 ○○○가 그 직원들의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취재하면서 '조합원 총회 종합대책'(을1호증의 1, 2002. 3.경 실시된 원고 조합 총회를 앞두고 ○○○가 작성한 서류로,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을 그 성향에 따라 강성과 온건 등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분석·파악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과 '2003년도 기관별 승진현황'(을5호증의 6, 이 사건 선거 직후 이루어진 ○○○ 승진인사에 대한 분석 자료로, 각 지점별 원고 지○○의 득표율이 명시되어 있다) 및 '면담직원'(을1호증의 3,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 지○○을 지지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한 직원들의 명단이다)이라는 각 문건을 입수하였고, 원고 조합의 전·현직 조합원과, ○○○의 전·현직 임원들 등을 인터뷰하였는데, ○○○의 전직 지점장은 "임금찬반투표 시 노조 지부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현 조합원들 중 일부는 '○○○는 노조활동이 활발하다는 이유로 섬 등 오지로 직원들을 발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에 피고 방송사는 2005. 7. 3. 9시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의 블랙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위 각 인터뷰와 함께 '지난해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가 노조활동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원고 조합 총회를 앞두고 ○○○ 노사협력팀이 만든 비밀문서에는 직원들을 그 성향에 따라 강성과 온건 등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분석·파악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의 전직 지점장들은 선거나 임금협상 시 노조 지부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털어놓았다, ○○○는 노조활동이 활발한 조합원들은 섬 등 오지로 보내어 특별관리하였다, 회사의 노조활동 개입은 명백한 현행법위반이나 ○○○는 지난해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했다'고 보도하면서, 원고들의 허락 없이 '제1화면'(아래에 그

출처로 '○○○ 홈페이지' 라고 표시하였다)을 위 보도 내용 중 '임금협상 시 노조 지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부분의 배경화면으로, 원고 지○○이 원고 조합을 대표하여 신노사문화대상을 시상하는 화면(원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화면이다. 이하 '제2화면'이라 한다)을 위 보도 내용 중 '회사의 노조활동 개입은 명백한 현행법위반이나 ○○○는 지난해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했다'는 부분의 배경화면으로 각 사용하여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피고 신○○은 피고 방송사의 보도국장으로 위 프로그램에 대하여 편집권한을 갖는 자이다.

마. 인터넷 신문 '레이버 투데이(Labor Today)'는 2005. 10. 27. '○○○가 원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사건 선거에도 ○○○가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그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들의 주장

(1) ○○○가 직원들의 노조활동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원고들도 ○○○가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같이 부당하게 노무관리를 한 점에 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그러한 ○○○의 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하면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제1, 2화면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들이 ○○○의 부당한 노무관리에 공모하거나 협조하는 등으로 개입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어 원고들

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지○○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2) 따라서 원고들은 각자 피고들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 피고 방송사는 별지 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보도는 ○○○가 그 직원들의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원고 지○○의 초상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 보도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의 부당한 노무관리 행위에 개입되어 있다고 보므로 결국 이 사건 보도는 위법하지 않은 것이다.

(3) 또한 이 사건 보도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피고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구할 수 없다.

## 3. 판단

### 가. 명예훼손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가 부당한 방법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원고들의 위법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닌 점, 제1화면은 이 사건 보도 전에 이미 한겨레신문이 원고 조합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을 보도하면서 사용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위 화면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명시하였던

점, 제2화면은 원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개된 것으로 그 자체로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로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표현으로라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일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의 부당한 노무관리 행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가 부당하게 관여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 지○○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도 ○○○의 위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보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나. 초상권 침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 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갖는다고 볼 것인데, 피고들이 원고 지○○의 허락 없이 제1, 2화면을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는 ○○○의 부당한 노무관리 행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 지○○의 초상권이라는 개인적인 이익과 언론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을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

16280 판결 참조).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 2화면은 원고 조합을 대표한 원고 지○○이 ○○○의 대표자와 악수를 하거나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하는 장면으로 제1화면은 이 사건 보도 전에 이미 다른 언론을 통하여 공개된 것인 점, 제2화면은 원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개된 것으로 이 사건 보도의 내용 중 ○○○와 원고 조합이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하였다는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점, 피고들은 제1화면에 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였던 점, ○○○가 부당하게 관여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 지○○이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들이 제1, 2화면을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하여 원고 지○○의 얼굴을 공표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지○○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정정보도청구는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었을 경우 즉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피고들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임대호

판사 강은주



보도 내용의 진실 상당성 여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등의 사정을 종합해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07. 12. 26. 자 판결(2007가합6630)

###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박○○(이하 원고)이 주식회사 동아일보(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가 지난 2006. 11. 27. 자 동아일보의 A1면 『일심회 보고서 “靑 비서관 수차례 등장”』 및 A3면 『정권 심장부까지 접근 시도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386’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연루된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일심회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장○○가 체포될 당시 발견된 각종 문건에 원고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어 공안당국은 원고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문건에 이름이 오르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고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손○○, 이○○ 등과 함께 1985.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데, 공안 당국은 원고가 손 씨 등의 정체를 알면서도 이들에게 협조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친분 때문에 만난 것인지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을 보도해 독자들에게 마치 원고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손○○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누설하였고, 이에 따라 그 정보가 장○○의 문건 내용에 원고의 이름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심어 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2006. 11. 27.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원이 확보한 장○○의 대북문건에 원고의 이름이 나온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6. 12. 11. ‘일심회의 포섭 대상에 청와대나 여권 인사들이 포함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위 인사들 중 내사 대상자는 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사실, 국정원이 송치한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위 검찰청이 보관 중인 장○○의 대북보고문건에는 원고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음” 등을 이유로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취재 및 기사 작성경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쉽사리 이를 확신하고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에서 더 나아가 당시 정치권 등 세간에 나돌던 풍

문을 공안당국의 판단인 것처럼 기사내용에 포함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권 : 2007가합6630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박 ○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최 정 민  
 피 고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변 론 종 결 : 2007. 11. 28.

판 결 선 고 : 2007. 12. 26.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7.부터 2007. 1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동아일보의 A3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제목을 별지 3 기재 기사의 게재 당시 부제목 활자체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본문 활자체로 1회 게재하라.

나. 만약 피고가 위 가.항 기재 기간 안에 위 가.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처음으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 A1면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그 제목은 이 사건 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로, 본문은 이 사건 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별지 2 기재 정정보도 요구문을 1회 게재하라. 만약 피고가 위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현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을 거쳐 2006. 2.경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발탁된 자이고, 피고는 일간신문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게재

피고는 2006. 11. 27. 동아일보의 A1면에 『일심회 보고서 “靑 비서관 수차례 등장”』이라는 제목의 별지 3 기재 기사를, A3면에 『정권 심장부까지 접근 시도했나』라는 제목의 별지 4 기재 기사(이하 위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기사는 '386'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연루된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일심회 사건의 핵심인물인 장OO가 체포될 당시 발견된 각종 문건에 원고(이 사건 기사에서는 원고를 'A비서관'으로 표현하였으나, 기사의 내용 중에 A비서관의 이력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어, 위 'A비서관'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한바(따라서 피해자의 특정 여부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편의상 A비서관으로 기재된 부분을 원고로 표현한다)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어 공안당국은 원고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문건에 이름이 오르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고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손OO, 이OO 등과 함께 1985.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데, 공안 당국은 원고가 손 씨 등의 정체를 알면서도 이들에게 협조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친분 때문에 만난 것인지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독자들에게 마치 원고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손OO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누설하였고, 이에 따라 그 정보가 장OO의 문건 내용에 원고의 이름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심어주었는바,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기사를 정정하는 내용의 별지 2 기재 '정정보도 요구문'을 게

재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설사 일부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공익성과 기사 내용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 등을 감안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 (1) 일반론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체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사에서는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장OO가 체포될 당시 발견된 각종 문건에 원고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어 공안당국이 원고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문건에 이름이 오르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위 장OO와 함께 체포된 손OO은 원고와 과거에 학생운동을 함께 한 사이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손OO을 통하여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장OO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들을 함께 나열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기사에 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다.

#### 나. 위법성 조각 여부

##### (1) 일반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 (2) 공익성

이 사건 기사는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발견된 문건에 청와대 비서관인 원고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장○○ 등이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원고에게 접근하여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하려는 시도를 했을 가능성 등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도 목적 및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 (3) 진실성 또는 상당성

##### (가) 인정사실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만복 국정원장은 2006. 11. 27.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원이 확보한 장○○의 대북문건에 원고의 이름이 나온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이 2006. 12. 8. 배포한 ‘일심회 간첩 사건 중간 수사 결과’에 의하면, 장○○, 손○○ 등 피의자 5명 전원을 오늘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 구성, 회합·통신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실체가 밝혀진 일심회의 하부조직 구성원들에 대해 국정원과 함께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은 2006. 12. 11. ‘일심회의 포섭 대상에 청와대나 여권 인사들이 포함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위 인사들 중 내사 대상자는 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사실, 국정원이 송치한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위 검찰청이 보관 중인 장○○의 대북보고문건에는 원고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나) 진실성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①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장○○가 체포될 당시 발견된 각종 문건에 원고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으며, ② 이에 공안당국이 원고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문건에 이름이 오르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 을 3호증의 1 내지 9, 을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 사실을 감안하면, 위 ①, ②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상당성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조○○ 기자가 2006. 11. 25.경 일심회 간첩사건의 수사를 직접 담당 한 국정원 중간 간부로부터 장○○의 대북보고문건에 원고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관계자를 통하여 위 사실을 재차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상당성 판단의 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설사 위와 같은 취재 및 기사 작성경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름이 등장하는 문건은 검찰로 넘겨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국정원 간부로부터 받은 제보를 검찰관계자에게 재차 확인하였다는 부분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쉽사리 이를 확신하고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에서 더 나아가 당시 정치권 등 세간에 나돌던 풍문을 공안당국의 판단인 것처럼 기사내용에 포함한 것을 감안하면, 위에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위 ①, ②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는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그 표현방법, 피고가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그에 대한 평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의 요건'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 본문에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정정을 구하는 ①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장○○가 체포될 당시 발견된 각종 문건에 원고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으며, ② 이에 공안당국이 원고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문건에 이름이 오르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은 허위이고,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방식과 그 비중 및 허위성의 정도, 고려해야 할 공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동아일보의 A3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제목은 이 사건 기사의 게재 당시 부제목 활자체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본문 활자체로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위에서 인용하는 내용을 넘어서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정정보도문의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불법행위일인 2006. 1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준수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2.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와 같이 간접강제금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이종훈

<별 지>

-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2006년 11월 27일자 A1면 및 A3면에 『일심회 보고서, “청, 비서관 수차례 등장”』, 『정권 심장부까지 접근 시도했다』라는 제목으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일심회 사건’의 핵심인물인 장○○씨가 국가정보원에 체포될 당시 발견된 각종 문건에 청와대 외교안보 분야의 A비서관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였고, 공안당국은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A비서관을 소환하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는 요지가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A비서관에 대한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판결 4

반론제도가 반론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협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 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자 판결(2006나112566)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

는 대법원이 지난 2006년 11월 23일 파기환송한 반론보도심판청구 소송에서 제1심 판결 중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와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신청인)의 패

소부분을 취소하고 피신청인 각각의 취소재판보도를 허용하며 여○○(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각 10,000,000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비롯한 4개 신문사가 2001년 9월과 10월 두 달에 걸쳐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하자 반론보도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문보도 중 일부 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그중 일부 혐의사실이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일반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명백히 사실에 반하여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보도내용 중 일부가 특별검사의 수사 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회에 증폭된 관심에 편승하여 신청인과 관련된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된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반론보도문 게재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3심 재판부는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이를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이 가지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헌법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러한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언론기관의 이익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다면 위와 같이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

보도청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9집 56~95면 참조, 2~3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4집 13~27면 참조).

파기 환송된 사건을 담당할 2심 재판부는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 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반론보도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반론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면서도 그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하여 예외적으로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허위의 ‘명백성’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킨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 허위성을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인식한 경우에는 허위성을 ‘인식’ 하고서도 감연히 반론보도청구를 한다는 점이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켜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는 원칙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를 구성하게 된다”며 “이러한 허위성의 인식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판시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6나112566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피항소인 : 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신청인, 항소인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김 재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2.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부사장 송 필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문 광 명, 최 세 련,  
이 춘 원, 김 형 근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2. 2. 1. 선고  
2001카기16806 판결

환송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4. 8. 31. 선고  
2002나14114 판결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변 론 종 결 : 2007. 5. 16.

판 결 선 고 : 2007. 7. 11.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신청인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들은 이 판결 선고 후 별지 3의 가, 나, 다  
기재 피신청인별 각 취소재판보도내용의 보도를 할  
수 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  
라.

4.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항소취지 및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

1.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1) 제1심 판결  
선고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1면 상단부분에 별지 1-1 반론보도문을 제  
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  
자로, 반론보도신청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  
로로 게재하고, (2) 제1심 판결 선고 후 편집이 완료되  
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신동아」 220면에 별지  
1-2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부분은 고  
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제1심 판결 선  
고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중  
앙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1-3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  
로, 반론보도신청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  
로 게재하고,

다. 만약 피신청인들이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위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  
까지 매일 3,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신청인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제1심 판결이 취소될 경우 피신청인들은 별지 3의  
가, 나, 다 기재 피신청인별 각 취소재판보도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13, 소을  
나 제4호증의 2, 소을나 제5호증의 2, 소을마 제2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보도내용

(1) 일간 「동아일보」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2001. 9. 14.부터  
2001. 10. 5.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 「동아  
일보」에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  
의 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조직 폭력배

출신 기업가', '국제○○○과 두목 출신', '1992년 광주 지역 최대폭력조직인 국제○○○파를 이끌었다'고 소개하고, 신청인이 2000. 5.경 이용호가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면서 20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2000. 7.경에도 D증권사를 통해 ○○○전자와 ○○○인더스의 전환사채 300억 원어치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10억 4,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신청인이 정관계 인사들과 교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신청인을 통해 이용호의 정관계 배후 및 비호세력 쪽으로 수사가 확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또 이용호가 약속어음 40억 원을 로비자금으로 신청인에게 전달했고, 신청인이 광주와 제주 등지에서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인출해 간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용하여, 신청인이 이용호가 횡령혐의로 긴급체포되자 진정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거액의 돈을 받아 상당부분을 가로챘고, 그 후 추가합의가 필요하다고 속여 다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하면서 주가조작 사기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보도하였다.

## (2) 월간 신동아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 「신동아」 2001년 11월호에서 '주먹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신청인이 국제○○○파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신청인은 주먹계를 움직이는 실세이거나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은 표면에 나서지 않고 두 사람을 내세워 조직을 관리하고 있고,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의 담당검사인 홍○○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속 당시 조 아무개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출신 야당의원 3, 4명이 정○○ 검찰총장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구속에 항의했고, 검찰 내에서도 신청인을 옹호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 (3) 중앙일보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2001. 9. 17.부터 2001. 10. 5.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 「중앙일보」에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의혹을 보도함에 있어, 신청인을 '국제○○○파의 배후'라고 하면서 신청인이 1992년 폭력조직 국제○○○파 두목으로 구속기소 됐었고, 오래전부터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두터운 인맥을 쌓아 온 이른바 '마당발'로서 이용호의 정·관계와 검찰 로비 창구 역할을 맡아왔으며, 이용호와 K상고 동창으로서 이용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관계자들을 상대로 신청인이 직접 구명로비를 하거나 정치권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국회의원은 물론 검·경 고위간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였고, 홍○○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한○○ 의원이 신청인의 구속 당시 면회를 하였다고 보도하고, 또 이용호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4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받았고 300억 원대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10억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이 로비자금으로 받은 돈 중 17억 원은 신청인이 이용호를 속여 가로챘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 나. 반론보도청구의 경과

신청인은 이 사건 각 보도에 대하여 별지 1-1, 2, 3의 각 기재와 같이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02. 2. 1. 신청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별지 2-1, 2, 3의 각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게재 및 1일 3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2002. 2. 9. 「동아일보」 제4면에 별지 2-1 반론보도문을, 「신동아」 2002년 3월호 220면에 별지 2-2 반론보도문을,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2002. 2. 10. 「중앙일보」 제4면에 별지 2-3 반론보도문을 각 게재하였다.

## 2.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은 허위이거나 왜곡·과장된 이 사건 각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명예와 신용 등 인격적 법익에 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1-1, 2, 3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내용은 그에 해당하는 원보도가 없거나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 나. 당원의 판단

(1) 반론보도청구권은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고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으며,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대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1996. 4. 25. 선고 95헌바25 결정 등 참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한 제21조 제4항 등의 헌법적 요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참조),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 의미와 함께 독자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반론보도청구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 권리임과 동시에 단순한 주관적 권리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그 실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8. 2. 24. 선고 96다40998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

그러나 한편 언론기관도 헌법 제21조에 기하여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반론보도문 게재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편집의 자유가 제한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활동을 위축시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음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서로 충돌하는 두 헌법적 이익 사이의 갈등은 상충하는 이익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두 이익이 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계확정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은 위와 같이 상충하는 이익의 조화를 꾀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 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이 가지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할 헌법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러한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언론기관의 이익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다면 위와 같이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청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반론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면서도 그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하여 예외적으로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허위의 '명백성'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킨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 허위성을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인식한 경우에는 허위성을 '인식' 하고서도 감연히 반론보도청구를 한다는 점이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켜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는 원칙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허위성의 인식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반론보도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반론보도청구 당시에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한편 이를 입증할 책임은 허위성의 인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게 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을 나 제12호증의 1, 2, 3, 소을나 제13호증, 소을나 제14호증의 6, 7, 8, 13, 소을나 제15호증, 소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폭력조직인 광주 국제○○파의 두목급 수괴로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992. 9.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조직인 광주 국제○○파에 자금지원을 하는 등 고문급 간부로 활동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996. 5.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 신청인은 "2000. 1.경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용호에게 검찰청의 아는 사람을 통하여 위 횡령 고소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교제비를 요구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고, 2000. 5.경 심○○의 고소 및 강○○의 진정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던 이용호에게 '20억 원을 주면 동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용호의 승낙을 얻은 다음, 이용호를 대리하여 심○○ 등과 화해 및 고소 취소 등을 알선한 결과, 심○○이 합의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고소를 취소함과 아울러 강○○으로 하여금 진정을 취하하게 하자, 이용호에게, 이용호가 신청인에게 40억 원의 약속어음을 주면 이를 할인받아 이 중 15억 원은 심○○, 강○○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3억 원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사무마를 위한 청탁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며, 2억

원은 신청인이 위 약속어음 결제일 이전에 이용호에게 20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데 따른 할인 이자와 신청인의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이용호에게 미리 교부한 11억 원 및 앞으로 줄 돈 9억 원과 상계하겠다고 하여, 이용호로부터 약속어음 8장 액면 합계 40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이용호로부터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아 할인받은 합의금 명목의 15억 원 중 10억 원만을 심○○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신청인의 개인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000. 6. 중순경 이용호에게 사실은 강○○ 등이 추가 합의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 등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거짓 말을 하여, 이에 속은 이용호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00. 7.경 이용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실업이 300억 원 규모의 해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증권 주식회사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용호로부터 액면금 10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3.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5억 9,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7. 25. 위 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사실, 전 한국○○거래소 사장인 이○○는 2002.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2000. 6.경 신청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실업이 ○○증권 주식회사를 주관사로 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령한 뒤, ○○증권 주식회사 사장인 박○○에게 주식회사 ○○실업의 전환사채 발행건을 잘 추진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가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2002. 12. 24. 상고가 기각된 사실, 이용호는 검찰에서

신청인이 2000. 1.경 자신으로부터 위 횡령 고소사건의 무마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 중 일부를 대검찰청 직원인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신청인은 1991. 12.경 광주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편지를 보내 김·경 인사 5명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중 한 명인 부장검사 1명은 그로 인하여 사직하였으며, 다른 한 명인 광주지방검찰청 사건과장 최○○는 1993. 5. 16. 신청인의 권유로 슬롯머신 업소에 투자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실, 1992년 당시 수사 검사였던 홍○○ 전 한나라당 의원은 신청인에 대한 수사 당시, 전직 국회의원인 조○○를 비롯한 광주지역 출신 야당의원 3, 4명이 신청인의 구속에 항의하였고, 고위 검찰간부로부터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당시의 신문기사 역시 위와 같은 주장을 보도한 사실, 신청인은 2000. 5.경 이용호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전 검찰총장인 김○○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실, 이용호는 검찰에서 신청인이 평소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인적관리를 하는데, 주변에 힘쓰는 사람이 많다고 과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도내용, 즉 신청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으로서 이용호가 고소당한 사건의 해결을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40억 원,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10억 4,000만 원을 받았고, 이용호의 돈을 횡령하거나 이용호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홍○○가 신청인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관계 인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는 모두 사실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이나 기타 정·관계 등에 신청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이 없다거나,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관계 인사가 없었다는 취지 및 신청인이 이용호나 ○○인더스를 위하여 로비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이는 또 신청인이 직접 관련되거나 신청인 본인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청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와 관련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그밖에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 중 나머지 부분, 즉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당시 신청인을 면회하거나 신청인이 출소 후 만난 검찰간부가 없었다거나, 한 ○○, 권○○, 김□□ 의원 등을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 신청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거나, 타인 명의로 ○○○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은 이 사건 보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단, 피신청인 중앙일보는 신청인이 이용호와 K상고 동창이라고 보도하였다가 2001. 9. 26. 중앙일보 제2면에 신청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는 요지의 정정 기사를 게재하였다) 지엽적인 것으로서 역시 신청인에게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신청인에게 그 행사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3.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에 관한 판단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2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여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는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

용료로서 적절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이 이 사건 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따라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피신청인들이 당심에서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당심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먼저, 취소재판의 보도 내용은 별지 3의 가, 나, 다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고,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면,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한 손해배상액은 위 각 보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형식과 크기의 지면에 광고를 하는 데 필요한 광고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그 광고료 상당액이 피신청인별로 각 1,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용 구

판사 김 진 현

판사 이 우 철

〈별 지 3〉 취소재판보도

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 제 목 : 여○○ 씨 당사 상대 반론보도청구 패소
- 내 용 : 본지는 2001. 9. 14.부터 같은 해 10. 5. 까지 사이에 여○○ 씨가 조폭출신으로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이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용호 사건’에 깊이 관여해 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에 여○○ 씨는 당사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2. 2. 1. 여○○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당사는 2002. 2. 9. 판결대로 여○○ 씨의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1. 위 사건에서 여○○ 씨가 과거 조직폭력단체에 간부로 가담한 바 있고, 이용호로부터 로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로비를 하거나 그 중 상당부분을 편취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 씨가 구한 반론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당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여○○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신동아

- 제 목 : 여○○ 씨 당사 상대 반론보도청구 패소
- 내 용 : 본지는 2001년 11월호에 ‘주먹과 권력’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권력과 폭력조직의 관계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여○○ 씨가 조폭출신으로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어 이들을 자신의 비호세력으로 삼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이에 여○○ 씨는 당사를 상대로 반론보도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2. 2. 1. 여○○ 씨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당사

는 본지 2002년 3월호에 판결대로 여○○ 씨의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1. 위 사건에서 여○○ 씨가 과거 조직폭력단체에 간부로 가담한 바 있고, 이용호로부터 로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로비를 하거나 그 중 상당부분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에, 여○○ 씨가 구한 반론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당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여○○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중앙일보

- 제 목 : 여○○ 씨 당사 상대 반론보도청구 패소
- 내 용 : 본지는 2001. 9. 17.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사이에 여○○ 씨가 조폭출신으로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용호 사건’에 깊이 관여해 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에 여○○ 씨는 당사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2. 2. 1. 여○○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당사는 2002. 2. 10. 판결대로 여○○ 씨의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1. 위 사건에서 여○○ 씨가 과거 조직폭력단체에 간부로 가담한 바 있고, 이용호로부터 로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로비를 하거나 그 중 상당부분을 횡령한 것은 사실이므로, 여○○ 씨가 구한 반론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당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여○○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